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11. 1. 1.
 개정 2012. 1. 1.
 개정 2013. 8.19.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0. 4.21.
 개정 2020.1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직원 위원은 본교 교무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팀)장, 결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제2항의 학생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에서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⑥ 제2항의 관련 전문가 위원은 1명으로 하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 각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로 총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장은 교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결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2.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결산 심의
3.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1주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등록금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학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

제5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4.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